

***** 공지사항 *****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시험기관 추가지정 안내
(생산기술연구원,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원 부설 품질평가센터와 삼성전자(주)가 전기통신 기자재 형식승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로써 전기통신 관련 시험기관이 한국통신과 데이콤에 이어 4개의 시험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보통신 시장의 급속한 확대와 정보통신기의 다양화 추세에 따라 효과적인 기업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품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시험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의 시험기관 지정은 민간기관을 최초로 지정한 것으로 행정규제완화 및 세계화를 실현한다는 정보통신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새롭게 출범하는 정보통신부의 진취적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생산기술연구원 부설 품질평가센터는 그동안 미국의 FCC(미연방 통신 위원회), 독일의 FTZ(독일 중앙전기통신국) 등 세계 각국의 인증 업무를 수행하여 관련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전화기, FAX, 모뎀, 유선방송용 전송기자재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도 시험기관 추가 지정으로 인해 형식승인과 관련된 애로사항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크게 환영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전기통신 기술과 제품의 품질 수준도 국제 수준으로 향상되어야 한다고 기대를 하고

지정번호	제 4 호	제 5 호
명 칭	생산기술연구원 부설	센터삼성전자(주)CS센터
소재지	구로구 구로동 222-13	용인군 기흥읍 농서리 산14
대표자	백수현	이승남
시험분야	유선분야	유선분야
유효기간	'95.1.10~'98.1.31	'95.1.10~'98.1.31

있다.

'97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휘장사업 참여 안내

1. 휘장사업의 의의

'97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공식휘장·공식마스코트·공식로고 등 대회상징물을 대회조직위가 기업체 등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반대급부로 기업체 등으로 부터 재화, 물자, 용역 등을 제공받음으로서 대회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및 물자 등을 조성

2. 휘장사업의 종류

종 류	개 념
공식후원자 (Official Sponsor)	공식휘장 및 마스코트의 독점적사용권 부여에 따른 대가로 대회에 필요한 재정을 후원하는 개인·단체
공식공급자 (Official Supplier)	공식후원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공식휘장 및 마스코트의 독점적 사용은 물론 동대회와 관련된 물자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그대가로 재화 또는 용역을 지원하는 개인·단체
공식상품화권자 (Official Licensee)	공식휘장 및 마스코트를 사용하여 기념품 및 생활용품 등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권리부여에 대한 반대급부로 조직위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단체

3. 대상품목 : 전자전기 제품

- 컴퓨터(주변기기 포함)
- 전기통신시설
- HiFi(스테레오 전축)
- 전광판
- 무정전 전원공급장비(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 테이프(비디오테이프 포함)
- 건전지
- CCTV
- 비디오장비(컴퓨터 게임기 및 팩)
- 가전제품
- 플로피디스크
- 전자사전

***** 공지사항 *****

○ 무선 통신 장비(위키토키)

○ 유선 통신 장비

4. 참가신청

가. 일자 : 향후 조직위에서 언론매체와 관련단체(조합, 협회, 진흥회 등) 통하여 공고예정

- 필요시 개별업체에 별도 통지

나. 신청절차 및 방법 : 업종에 따라 별도 공고예정임

다. 제출처 : '97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사업부 사업과(425-2475)

5. 신청자격

가. 공식후원자(Official Sponsor)

- 국내에서 대상품목을 제조·생산하거나 판매·조달을 전문으로 하는 자

나. 공식공급자(Official Supplier)

- 국내에서 대상품목을 제조·생산하거나 판매·조달을 전문으로 하는 자

다. 공식상품화권자(Official Licensee)

- 국내에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
- 대상제품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역력이 있는 자
- 88서울올림픽, 대전EXPO 등에 휘장참여 경험이 있는 자(해당자에 한함)

6. 제출서류

가. 참여신청서(당 조직위원회 소정양식)

나. 사업제안서 (A4용지)

다. 재무제표(최근 2개년 : 심사기준 참고자료)

라. 계약이행보증금 납부영수증(당 조직위원회 소정양식)

마.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바. 과거 휘장사업 참여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 각서(당 조직위원회 소정양식)

아. 대표자 인감증명서

7. 참가대가 제시방법

가. 「현금제시」방법

나. 「현금+물자공급(금액환산 별도 필요)」

다. 「물자공급」방법

라. 「상기 가+나+다+부대조건 제시」방법

8. 참가품목수 : 1개기업이 품목수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9. 업체선정기준

○ 최고가격을 제시한 기업

- 현금+물자 포함가격

- 물자는 공장도 가격이며 공장도가격 산정이 불가할시는 감정가격, 도매가격, 원가계산, 기타 조직위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으로 함

※ 물자는 당 조직위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와 서비스 등을 말함

○ 가격이 동액일 경우 부대조건이 유리한 기업

- 할인요율, 서비스 등 등

○ 다음의 경우는 상위1, 2위 업체와 시담 또는 제한입찰을 통하여 선정 또는 유찰

- 제시가격이 동액일 경우

- 조직위 기준금액이하일 경우

- 업체의 요구조건이 수락 불가능한 경우

- 기타 조직위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휘장사업 참여에 따른 권리와 의무

○ 공식명칭 사용권

- '97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공식후원사(공급사, 상품화권자)라는 명칭을 권리품목의 선전·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공식휘장·공식마스코·공식로고 등의 독점적 사용권

- 휘장·마스코트를 허가품목에 표시, 제작·판매할 수 있는 권리

○ 조직위 소요물품의 독점적 공급권

- 조직위에서 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물자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공급 할수 있는

***** 공지사항 *****

권리

- 대회조직위원회가 확보가능한 임대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권리
- 대회조직위원회가 확보가능한 광고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대회조직위원회 공식기록에 영구보존
- 기타

11. 권리행사 기간 및 지역

- 기간 : 계약일~ '97. 12월 31일
- 지역 : 원칙적으로 국내에 한정됨(국외지역 권리행사 필요시 조직위의 별도 허가)

12. 문의처 : 조직위원회 사업본부 사업과 (Tel : 425-2475)

'95년도 산재보험제도 안내

1. 산재보험제도

산재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상으로 부상·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사업주의 보상책임을 대신하여 정부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해줌으로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을 보호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이며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소정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근로기준법상 보상책임을 면하게 되므로 안심하고 기업경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2.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

- 상시 5인이상의 사업장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시·상수도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통신업, 부동산업, 기타 서비스업
-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 ※ 본사단위로 동종사업 일괄 가입
- 2년전 총공사실적이 50억원 이상이고 년도 초일 현재 4천만원공사 1개이상 시공하는 사업체(기준미만 업체는 승인받아 가입 가

능)

- 별목재적량 800m³이상 별목업

3. 가입절차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 가입의무가 없는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 동종사업 일괄 적용대상 제외 사업주가 가입을 원할 경우 당해 보험년도 개시 7일 전에 『승인신청서』를 제출

4. 보험료 보고 및 납부

- 개산보험료
 - 1년간(또는 공사기간) 지급할 임금총액 추정액에 해당 보험요율을 곱하여 당해 연도 개산보험료를 산정하고
 - 연도초일로 부터 70일 이내에 보고하고 은행에 납부(연4회 분할납부 가능)
 - 증가보험료
 - 개산보험료 납부후 임금총액추정액이 100%이상으로 증가가 예상될 경우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납부
 - 확정보험료
 - 1년간(또는 공사기간)실제지급한 임금총액에 해당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 이미 납부한 개산(증가)보험료와의 차액을 다음년도 초일로 부터 70일 이내에 보고·납부(초과납부액은 반환 혹은 충당가능)
- ### 5. 보험관계 성립신고 보험료납부 태만시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
- 보험급여액 징수
 -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 발생한 재해는 그 보험급여액의 50%를 별도 징수
 - 사업개시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 발생한 재해는 그 보험급여액의 5%를 별도 징수
 - 보험료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 발생한 재해는 태납율에 따라 그 보험급여액의 10%

***** 공지사항 *****

- 를 별도 징수
 - 연체금 및 가산금 징수
 - 산재보험료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일수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
 - 확정보험료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별도로 10%의 가산금 징수
 - ※ 보험관계성립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에는 과거보험료(최고 3년간)를 소급징수함은 물론 연체금 및 가산금 징수
 - 6. 산재보험사무를 무료로 대신해 주는 보험사무조합
- 사무인력이 부족한 300인미만(건설업은 2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보험사무조합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보험료 납부 등 산재보험사무를 대신해 줍니다.

'95 부산 전자전람회 개최안내

1. 전시회명 : (국문) '95 부산 전자전람회
(영문) The 1995 Korea Electronics Show, Pusan
2. 사업목적
 - 환태평양시대의 중심 전자산업국을 향한 기반구축
 - 최신 기술 및 시장정보 교환으로 신제품 개발촉진
 - 지역경제 활성화
 - 우수상품보급을 통한 국민문화생활 향상
3. 주최 : 한국전자공업진흥회
(후원예정)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부산시, 전자신문, 부산 MBC, 부산 KBS, 부산일보, 경북일보, 경남신문
4. 전시기간 : 1995. 5. 24(수)~5. 28(일), (5일간)
 - 입차기간 : '95. 5. 20(토)~5. 29(월) (10일간)

- 준비기간 : 5.20(토)~5. 23(화) (4일간)
- 철거기간 : 5. 28(18:00이후)~5. 29(월)
- 5. 장소 : 부산무역전시관(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수영요트경기장)
- 6. 전시품목
 -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주변기기 및 액세서리
 - 시스템 S/W, 응용S/W, 시스템 통합
 - LAN, VAN, DB, PC통신
 - 화상회의, 3DO, CD-ROM 및 타이틀
 - 케이블 TV장비, 프로그램, 위성방송
 - 이동통신기기, 유무선통신기기
 - 전자게임
 - 반도체 등 전자부품 일체
 - 가사자동화/사무자동화/공장자동화 기기
 - 카일렉트로닉스(도난경보기, 카오디오, 카폰 등)
- 7. 행사규모전시장
 - 총면적 : 3,240 S/M(1,450평)
 - 참가업체 : 80개사
 - 참관인 : 60,000명
- 8. 개관식 : '95. 5. 24(수), 10:00
- 9. 부대행사 : 전자기술 관련세미나 외
- 10. 문의처 : 본회 전시과
(Tel : 553-0941/7 교)48)

'95년도 공산품 물가안정 시책 안내

1. 기본방향

우리경제의 세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진국형의 구조적인 물가 안정기반 구축이 필수과제이다.

세계화 원년인 '95년에는 물가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비자 물가를 연평균, 5%선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2. 물가안정 대책
 - 1) 민간부문의 물가안정 노력 강화

***** 공지사항 *****

경영혁신을 통한 물가안정 노력 강화를 위해 임금상승, 국제 원자재 가격 등 가격 인상요인은 경영혁신을 통하여 흡수하고 민간단체의 물가안정 노력 활성화를 위해 원자재 수급, 생산제품 유통상의 애로요인 타개책 수립 및 대정부 건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물가 안정기반의 조성

물류체계 개선으로 중간 유통비용을 절감키 위해 유통단지 개발촉진법 제정 및 물류애로요인 파악, 방안을 강구하고 유통시장에서의 실효성 있는 경쟁 촉진을 위해 규제완화,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의 관세율, 특소세율 인하를 검토할 것이다.

3) 국제 원자재 가격변동에 적극 대처

매월 국제 원자재 가격 동향파악을 통하여 할당관세 적용 등 원자재 수급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4) 주요 공산품의 가격동향 점검 강화

통상산업부 국장급을 반장으로 분야별 수급 및 물가안정 대책반 구성, 운영할 것이다.

5) 독과점 품목 등의 가격인상 사후관리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일자	1. 12	2. 23	3. 30	4. 13	5. 18	6. 15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일자	1. 12	2. 23	3. 30	4. 13	5. 18	6. 15

3.23(목), 4.6(목)

다. 교육기간 : 14:00-18:00(※동절기는 17:30까지)

라. 교육장소

- 본 청 : 공업진흥청 1층 중강당(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 순회교육 : 각 공업단지관리공단(서울구로, 경기안산, 경북구미, 경남창원, 전남여천)
- ※ 공단별 세부순회교육 계획은 추후 통보 예정

마. 교육시간 및 내용

시간별	소요시간	주요내용	강사
14:00-14:50	50분	품질경영 추진시책 방향	공업진흥청
15:00-16:00	60분	품질경영 추진요령 및 방법	대학교수
16:10-17:10	60분	품질경영 성공사례(기업)	기업체
17:10-18:00	50분	품질경영 우수추진자 사례(개인)	기업체

바. 품질대학강사 선정

- 품질대학강사는 아래 선정대상자중에서 품질대학 개강일자 7일전에 활용할 계획임
- 품질대학 강사 선정 대상자
 - 대한품질경영학회 소속 교수
 - '94년도 품질경영 정부서훈 유공자(산업훈장 및 포장)
 - '94년도 품질명장
 - '94년도 우수품질분임조
 - 기타 품질경영 관리 강의 경험자 등

3. 수강신청요령

- 월별 수강신청 기한 : 수강 희망일자 7일전 까지 제출(우편 또는 전화, FAX이용)
- 신청요령
 - 그룹 추진본부 소속 계열기업은 그룹 추진본부에서 월별로 일괄 신청
 - 모기업 추진본부 소속 협력업체는 모기업

'95년도 『품질대학』 운영계획 안내

1. 목적

WTO체제 출범으로 무한경쟁시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경영을 전 산업체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품질의식 교육을 통한 품질혁신을 가속화함으로써 품질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함

2. 품질대학 운영계획

가. 연간 교육회수 : 12회(※순회교육 : 5회)

나. 월별 교육일자

- 본청교육
- 순회교육 : 3.2(목), 3.9(목), 3.16(목),

***** 공지사항 *****

- 추진본부에서 월별로 일괄 신청
- 그룹 및 모기업 추진본부 소속업체가 아닌 업체는 산업별 또는 중소기업별 추진본부에서 일괄 신청
- 기타 업체는 업체별로 개별 신청
- 4. 교육 참가자 관리
 - 그룹별, 기업별로 교육 참가자를 관리하여 이를 유공자상, 품질경영상, 부문상, 품질명장, 분임조상 등 품질경영 활동평가에 반영함
- 5. 문의처 : 공업진흥청 품질관리과(전화 02-503-7923, FAX : 02-504-6755)

- 에 한하여 인정한다.
- (5) 교육과정을 유치하는 국내기관은 교육·훈련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원칙으로 한다.
- (6) 환경경영심사원 양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다음에 적합한자로 한다.
 - 1) 고등학교 졸업자는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을 것.
 - 2) 전문대학교 졸업자는 4년 6월의 실무경험이 있을 것.
 - 3) 4년제 대학교 졸업자는 4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을 것.
- 비고 : 실무경험은 환경관련업무 또는 품질경영관련 업무를 말하며 환경관리 학과의 석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환경관련 기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실무경험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다.
- (7) 교육과정을 인정받은 국내 교육기관은 교육참가자가 (6)의 요건에 적합한자임을 교육 실시전에 증빙서류로 확인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환경경영심사원 양성과정 인정지침 안내

1.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내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 확립에 필요한 환경경영심사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개발된 환경경영심사원 양성과정의 인정원칙과 인정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인정원칙
 - 1) 일반원칙
 - (1) 국내 교육기관 지정기준 제정 이전에는 한시적으로 외국에서 개발된 환경경영심사원 양성과정에 대해 인정한다.
 - (2) 국내 교육기관 지정기준이 제정되면 제정된 지정기준에 의거 심사한 후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외국교육기관도 국내기관과 동등 대우).
 - (3) 인정지침 시행이전 국내 유치 외국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해서는 부칙규정에 의한 경과조치에 의거 인정한다.
 - (4) 국내 교육기관 지정기준 시행이후 외국 현지에서 과정을 이수하거나 인정받지 않은 교육기관 교육이수자에 대해서는 상호호혜 차원에서 교육과정이 상호인정된 경우

- 2) 교육과정 인정기준
 - 가. 일반요건
 - (1) 교육시간은 최소 40시간(시험포함) 이상으로서 강의, 역할분담실습, 사례연구 및 2시간의 필기시험을 포함하여 5일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과정규모는 2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 (2) 교육시설은 강의 및 그룹활동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한다.
 - (3) 교육과정 합격자는 교육기관 소속 국가의 국가적 수준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에 의거 등록기관에 등록가능한 과정이어야 한다.
 - (4) 강사는 환경경영심사원 양성과정 또는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의 강의경험이 최소한

***** 공지사항 *****

3회이상 있어야 한다.

나. 환경적 고려요건

- (1) ISO 14000(초안)에서 정한 영역이 가능한 고려되어야 한다.
- (2) 기업의 현장 실습을 포함하여 환경심사에 대한 공동작업 및 역할분담실습이 전체 시간의 30%이상이어야 한다.
- (3) 환경영향 평가등 환경특성이 고려된 기법 교육이 10%이상이어야 한다.
- (4) 심사절차는 환경적 특성과 영향을 파악할 수있는 요소를 고려한 사례연구가 포함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5) EMS이외의 다른 유형의 환경심사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실습이 있어야 한다.

다. 교육과정의 요건

ISO 14012(초안)을 근거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되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분 야	기 본 요 건
○ 환경경영 규격	○ EMS규격의 종류 ○ 환경경영관련 관리 수단 ○ 국제표준화 동향 ○ EMS규격의 개요와 해설 ○ 환경적측면(환경영향식별, 정량화, 평가방법등) 관리기법 및 공동작업
○ 심사절차, 과정 및 기술(환경적 관점을 고려한 심사절차)	○ 심사범위 설정 및 공동작업 ○ 예비검토 방법 및 공동작업 ○ 환경방침 심사 및 공동작업 ○ 환경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심사활동 요령 ○ 인터뷰 기술 및 역할분담실습
○ 심사 및 심사후 처리	○ 현장심사 준비 ○ 현장심사 ○ 심사보고서 작성요령 및 공동작업 ○ 심사후 처리 및 시정조치
○ 환경관련 법규상의 관련 요구 사항	○ 환경관련 각국의 법률 개요 ○ 한국의 환경법제와 특성 및 개요 ○ 법적요건의 환경심사 관점 및 요령
○ 환경심사의 종류	○ 환경심사의 유형 및 유형별 심사실무 ○ EMS심사요령

3. 인정절차 및 확인

1) 이 지침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인정받고자 하는 국내기관은 교육과정 개시 최소 20일 전까지 다음서류를 갖추어 공업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교육장소, 일정, 교육강사 약력, 교육기관 개요
- (2) 교육과정 참여자에 대한 기준(ISO/CD 14012의 “교육 및 실무경험” 참조)
- (3) 커리큘럼, 주교재, 부교재, 시험문제 등의 자료와 공동작업 진행방법, 합격자 평가기준 및 방법, 교육운영방법 등에 대한 요약서
- (4) 교육시설과 행정지원 계획서
- (5) 교육과정이 교육기관 소속국가 또는 국가적 효력을 갖는 유효한 기관에서 인정되었음을 나타내는 문서(등록기능여부 포함)
- (6)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하여 요청한 사항

2) 공업진흥청장은 교육과정 개시 15일전까지 인정여부를 회신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부기하여 보완하도록 통보한다.

3) 공업진흥청장은 교육진행 과정중에는 인정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점검하고 문제가 될 경우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교육과정 합격자에 대한 관리 등

1) 인정된 과정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공식 기본 훈련과정을 이후한 것으로 인정하고 환경심사원보로 관리한다.

2) 시험인증프로그램 참여요원 양성을 위해 기 인정된 교육과정 합격자는 시험인증프로그램의 실무과정에 참여시키고 이 과정을 통하여 적정요건이 구비된 경우는 환경경영심사원으로 등록하며 탈락자에 대해서는 환경경영심사원보로 관리한다.

3) 교육과정이 종료되면 교육실시기관은 그 결

***** 공지사항 *****

과(인적사항 및 접수 등)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 본 인정지침에 의하여 인정받은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공업진흥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공업진흥청장으로 부터 인정받은 교육과정임을 교재, 광고 또는 홍보물에 표시할 수 있다.

- 부 칙 -

1. 적용일 : 이 지침은 1995. 1. 7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 이 지침 적용일 이전에 외국기관의 교육과정을 유치하여 실시한 교육은 이 인정지침과 상이한 부분에 대한 보충교육이 실시된 경우에 한하여 이 지침에 의하여 인정된 것으로 본다.

- 추천→전문진단팀의 정밀진단→기술지원프로그램 발표→업체선정
6. 지원기간
 - 기술지원과제의 해결에 필요한 기간(30일 단위로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함)
7. 지원내용
 - 정부가 선발한 최신기법 전문가 또는 전문가팀 중 해당업체가 희망하는 자를 지도위원으로 파견
 - 업체가 지도위원에 지급하는 비용 중 지도위원당 10만원을 정부에서 지급
 -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과 동종의 국내외 제품은 품질을 분석하여 품질개선 및 기술개발 정보제공
 - 노후설비 교체 및 자동화설비 구입자금 등 추천
 - 업체별 전담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업체의 애로사항·건의사항의 해결지원

중소기업 세계일류화 기술지원

1. 사업목적
 - 일류화를 지향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원가절감·품질보증 등에 대한 기술지원
2. '95 사업목표
 - 중견·중소기업 100개 업체 지원
3. 대상업체
 - KS 등 품질인증업체
 - NT, KT 등 기술인정마크 획득업체
 - 산업부문 각종 포상을 수상한 업체로서 기술전망, 시장성, 지도추진팀, 재무구조 등이 우수하고 세계일류기업이 되고자 하는 경영자의 의지가 확고한 중견·중소기업
4. 추천기관
 - 생산자단체·조합·협회, 공단, 시·도등 유관기관, 민간지도 기관
5. 선정절차

생산현장 기반기술 산학협동 지도 안내

1. 사업목적
 - 생산기반기술분야, 안전위해상품 및 현장애로기술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애로 해결
2. '95 사업목표
 - 생산기반기술분야 : 300업체
 - 안전위해분야 : 50업체
 - 현장애로기술분야 : 350업체
3. 대상업체
 - 생산기반기술 : 금형, 도금, 용접, 주단조, 열처리, 표면처리, 염색, 정밀측정기술분야 중소기업
 - 안전위해 : 신체, 위생, 환경 등의 안전위해상품 제조 중소기업

공지사항

- 현장애로기술 : 기계류 · 부품 · 소재 · 계량
기제조 중소기업
- 4. 추천기관
- 생산자단체 · 조합 · 협회, 공단, 시 · 도 등
유관기관, 민간지도 기관
- 5. 선정절차
- 추천→애로기술진단→업체선정
- 6. 지도기간
- 단일과제의 해결에 필요한 기간(30일 단위
로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
함)
- 7. 지원내용
- 업체가 희망하는 업계 · 학계 · 연구소 전문
가 또는 청이 선정한 전문가 파견
- 업체가 지도위원에게 지급하는 지도비용 중
8~10만원을 정부에서 지급
- 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업체제품에 대한 품
질분석 지원
- 지방기술원 및 관련기관의 시험설비 이용

〈협조 요청 사항〉

- 가. 세계 일류화 모델 중소기업 지원
- 각 단체, 조합, 협회 및 유관기관은 소속업
체 및 유관업체에 공업진흥청의 지도계획을
홍보하고 지도희망업체 조사
 - 지도희망업체중 시장성 · 기술개발 · 재무구
조 · 경영자의 지도수용태세 등을 감안하여
성장이 유망한 업체를 선정하여 <양식 1>에
의거 공업진흥청에 추천
 - 추천기간 및 연락처
 - 추천기간 : '94. 12. ~ '95. 1
 - 연락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공업
진흥청 정밀경영과 우)427-010
TEL : 503-7950~9 (교) 234, 235
(직) 503-7921 (FAX)502-4107
- 나. 생산현장기반기술 산학협동지도
- 각 단체, 조합, 협회 및 유관기관은 생산기

반기술 분야, 안전위해 분야, 현장애로기술
분야에서 기술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공업진흥청의 기술지도계획 안
내 및 지도희망 업체를 조사하여 <양식 2>
에 의하여 각 지방기술원 또는 공업진흥청
에 추천(업체가 직접 신청할 수 있음)

- 추천기간 및 연락처
 - 추천기간 : '94. 12. ~ '95. 1
 - 연락처 : 공업진흥청 기술지원과 또는 업체
소재 각 지방기술원(별지 지도기관별 전화
번호 참조)

다. 전문지도팀 추천

- 각 지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도팀 및 지
도인력의 지도분양 · 전문기법에 관한 자료
를 <양식 3>에 의거 제출
- 제출기간 : '94. 12. ~ '95. 1
- 제출기관 : 공업진흥청 기술지원과

기술지도기관 현황

지 도 기 관	전화번호/FAX번호
국립공업기술원	02)503-7981/503-7992
요업기술원	02)855-0887/865-6721
경기지방공업기술원	0331)294-6381/294-6386
강원지방공업기술원	0361) 56-6033/ 56-6035
충북지방공업기술원	0431) 67-3380/ 66-4682
충남지방공업기술원	042)624-2004/626-1241
전북지방공업기술원	0652)213-1912/211-8375
전남지방공업기술원	062)366-9663~6/366-1922
경북지방공업기술원	053)654-3165/626-2604
경남지방공업기술원	0551) 62-5144/ 62-5146
부산지방공업기술원	051)335-4033/335-4334
제주지방공업기술원	064) 56-5546/ 56-5548
인천지방공업기술원	032)765-5457/765-5459

위험시설의 안전관리 방안에 따른 기업의 대책 안내

- 1. 현황
- 1) 주요시설현황

공지사항

- 원유정제시설 : 5
- 석유화학시설 : 46
- 가스공사 인수기지 : 1
- LPG저장기지 : 3
- 도시가스시설 : 30
- LPG충전·저장시설 : 988개소 등

2) 가스사고현황

가스사고는 가스소비량 증가 및 가스사용시설의 복잡, 다양화 등으로 인해 다소 증가하는 추세로서 년 평균 약 100여건 발생했다. 가스별로는 대중연료인 LPG가 총 사고건수의 70% 차지

가스사고원인의 대부분이 가스 취급부주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의 소비자 과실에 의한 사고가 60%이상 발생했다. 대상별로는 일반주택, 공동주택 등이 70%이상 차지

최근 발생한 가스사고중 대형사고로서는 아현 밸브기지 폭발사고, 여천 화인케미칼 독성가스(포스겐) 누출사고, 광주 해양도시가스 폭발사고 등이 발생했다. 이들 사고의 원인은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와 시설노후로 사고 유발

특히 도시가스사고는 지역별 가스공급 중단으로 인해 시민들의 기본생활 불편요인으로 집단 민원을 야기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초래 했으며 도시가스 배관 파손사고 및 부설시공 등에 의한 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2. 안전관리상 문제점

1) 석유화학시설

- 건설년수가 20년 이상 경과로 인한 시설노후화로 대형사고 발생요인 상존
- 새로운 생산공정개발로 초고압시설 등 위험시설 증가
- 검사나 점검업무를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규제로 잘못 이해
-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안전관리비용 투자저조

- 자율안전관리체제 미흡

2) 도시가스시설

- 가스수요량 급증으로 도심통과배관의 공급압력 상승으로 위험요인 가중
- 매물배관 설치년수 장기간 경과로 배관 노후화
- 환상 배관망 구축 미흡으로 사고시 가스공급중단 사례 발생
- 가스사업자의 시공현장 관리·감독 미흡으로 매물배관 부설시공
- 주요시설(밸브기지 등)에 대한 원격 감시체계(CCTV 등)미비

3) 그밖의 시설

- 저장탱크 등 주요시설의 안전장치 자체점검·관리 미흡
- 가스용품, 배관 등 노후시설의 적기 교체 기피
- 요식업소등 소규모 사용시설 자체안전점검소홀
- LPG판매소 등 가스공급업소의 안전점검의무규정 등 불이행

3. 안전확보방안

1) 안전관리 기본방향

정부, 전문기관 그리고 기업이 분담된 역할과 기능을 성실히 수행할때 안전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 먼저 정부는 안전과 재해예방에 대한 기본방향 및 정책을 입안·결정하고, 다음으로 기업은 자기사업장내의 모든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시설 개·보수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대책을 강구하며, 끝으로 전문기관은 분야별 기술전문성을 기초로 기업에 대한 안전점검, 전문기술 위탁훈련 및 외국의 기술정보를 조사·제공하고 대국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계몽과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2) 기업의 안전관리 역할

안전관리업무 기본의식을 전환 안전이 곧 생

***** 공지사항 *****

산성 향상이라는 시각으로 인식하여 정부 또는 전문기관의 안전관리업무 규제 인식을 탈피해야 한다.

안전관리비용 투자 확대를 위해 매출액의 일정비율(약 2~5%)을 안전관리비용으로 투자하고 노후시설 개·보수 적기 실시해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운용을 위해 안전관리분야 종사자에 대한 우대와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를 해야 할 것이다.

4. 전문기관의 역할

안전관리업무 연계지도 및 확인을 통한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분야별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며, 외국의 기술정보제공 및 선진 안전기법 도입·보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국민 가스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교육·홍보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5.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확보계획 (가스안전공사)

- 도시가스시설 등 안전진단
 - 대상 : 가스공사 등 31개사
 - 기간 : '95. 1. 9~2. 25
 - 구성 : 국내·외 학계, 업계, 공사 전문가로 합동구성
 - 진단중점 : 도시가스시설의 안전관리체계 등 전반적인 안전성 정밀진단
- 석유화학시설 안전진단
 - 대상 : (주)유공 등 10년 이상 경과업소 21개사
 - 기간 : '95. 3. ~12.
 - 구성 : 국내·외 학계, 업계, 공사 전문가로 합동구성
 - 진단중점 : Over Haul기간을 이용 저장탱크, 압력용기, 배관 등 시설전반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95. 세정개혁 조치에 따른 부가가치세 행정 개선방안 및 부자료거래 규제·근절대책을 안내합니다.

금년 1월 25일 마감되는 부가가치세 신고부터는 신고납세 본래의 취지대로 세무공무원이 신고서를대신 작성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본인이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번 확정신고부터 크게 달라지는 점

구 분	종 전	개 선	
신고관	시전 신고지도	○ 중점관리대상자 위주로 신고전에 지도확인·개별 신고지도 등 실시	○ 일체의 세무간섭 배제
	개별사업장 방문	○ 필요한 경우 사업장 방문 개별 지도	○ 신고지도 목적의 사업장 방문 일체금지
관련업무	종사직원의 신고서 작성대행	○ 신고서 미작성자에 대하여 종사직원의 작성대행이 관례화	○ 세무공무원의 신고서작성대행 지양(신고납세제도의 취지에 충실)
	신고서 접수	○ 중점관리대상자 등은 해당과에서 내용을 개별 검토 후 접수	○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필수 기재 사항과 계산착오 여부만 확인
불성실자	세원관리팀 별도 편성·운영	○ 없었음	○ 전국 1,000여개팀 신설 운영 - 각종 정보·심리자료 수집분석 ○ 주요 취약세원은 종목별로 전담 관리팀을 지정
	불성실 신고자 조치	○ 신고전·후에 경정조사 실시 필요한 경우 추적 조사 병행 ○ 예외적인 경우에만 조세법칙 처리	○ 전국 관서를 상시 세무조사체제로 운영 - 5년간의 신고실적과 전 재산형성과정 정밀추적 ○ 조세법칙자 처벌 및 일정기준 해당자는 전원 고발조치
직원관리	비리관련 종사직원 조치	○ 사전 예방차원의 감찰 활동 ○ 비리관련자는 자체정계	○ 비리관련자는 자체 고발조치 ○ 비리신고·고발전화 개설

'95세정개혁 조치에 따른 부가가치세 행정 개선방안 안내

***** 공지사항 *****

장인정신·기술혁신·기능향상 촉진을 위한 작문·포스터·표어 모집 안내

1. 접수기간 : '95. 2. 20 ~ '95. 2. 28
2. 응모자격 : 제한없음(기술, 기능인 본인, 배우자, 자녀, 기업체인사 및 노무담당자 등 기술, 기능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
3. 응모주제
 - 기능인의 긍지와 자부심 및 장인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주제
 - 전체 국민들의 기술, 기능에 대한 인식을 개선 또는 제고할 수 있는 주제
 - 학력보다는 능력위주의 사회풍토 확산, 정착에 도움이 되는 주제
 - 국제경쟁력강화에 필요한 기술혁신 및 기능향상 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주제
 - 기타 기술, 기능장려에 도움이 되는 주제
4. 응모방법

응모부분	규격	요령 및 기타
수기및장작문	200자원고지50매내외	체험수기 및 창작문 등 형식구에 없음
포스터	크기 : 2절(55cm×79cm) 색도제한없음	작품설명서첨부, 사진으로 제작한 작품도 가능, 로고활용작품 우대
표어	16자 이내	

5. 시상내용

구분	시상	수시	표어	포스터
최우수작	노동부장관상 각 1편	300만원	50만원	300만원
우수작	공단 이사장상(작문, 포스터, 각 1편, 표어 2편)	200만원	각30만원	200만원
장려상	공단 이사장상(작문 10편, 표어 3편, 포스터 3편)	각50만원	각20만원	각100만원

6. 입상작발표 : '95년 3월 하순(공단본부, 지방사무소 게시판공고 및 입상자에 개별통지)
7. 기타
 - 응모편수 제한 없음(응모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장명, 전화번호 기재)
 - 직접 또는 우편접수(마감당일 소인 유효)
 - 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작품의 저작권은 공단 소유
8.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고용개발부 기능장려과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70-4
우편번호 : 121-757
전화(02)715-3213~3(교환523)

용어해설

VMH(Voice Message Handing) 무선호출용어, TDX-PS 용어

음성메시지를 녹음하거나 재생하고 유지보수를 위한 자체 시험을 수행한다. 음성메시지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음성경로인 PCM 서브하이웨이를 통

한 TSW와의 정합기능과, 본 장치에서 직접 녹음과 재생을 할 수 있도록 녹음기와 시험대용 송·수신기의 정합기능을 갖는다.